

혁신법 시행에 따른 연구수당 기준 적용 가이드라인

(연구제도혁신과, '22.3.25)

1. 배경 및 규정 현황

- (배경) 혁신법 및 매뉴얼 시행 이전에 협약을 체결한 계속과제의 연구수당 계상, 증액 및 정산에 대한 연구현장의 문의 증가
 - (혁신법 前) 「공동관리규정」은 연구수당* 증액 가능여부를 규정하지 않았으나 「표준 매뉴얼」은 원래 연구계획보다 증액할 수 없음을 규정
 - 이 때, 원래 연구계획은 연차별 연구개발 계획을 의미함
 - (혁신법 後) 「연구비 사용 기준」 제26조제2항 단서는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연구수당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 없음을 규정
 - 「혁신법」은 전체 연구 기간을 대상으로 1회의 협약만 체결하도록 규정하는 바, 협약 체결 당시는 과제의 최초 협약 체결 시점을 의미
- ※ 협약 체결 당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혁신법 매뉴얼'(21.6.30. 배포)에 포함됨

⇒ 계속과제의 연구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후, 연구현장 안내 필요

2. 경과조치 내용

① 최초 협약 당시 연구수당이 계상되지 않은 계속과제

- 적용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중 혁신법 매뉴얼이 발간된 2021. 6.30.이전에 협약이 체결되어 2022. 3월 현재 진행 중인 계속과제 중에서 연구수당이 계상되지 않은 과제
 - ※ 최초 협약 체결 당시에 총연구기간에 대해 연차별 연구수당을 기 계상한 과제는 제외
- 적용기간 : 해당 경과조치 안내 후 2개월까지
 - ※ 과제 관리 시스템 반영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기간 연장 가능
- 적용방법 : 협약 변경 등을 통해 과제 관리 시스템에 연차별 연구수당을 새롭게 계상(기 입력금액은 변경 불가)
 - 상기 방법으로 기간 내 계상한 연구수당 금액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연구수당 금액으로 간주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19. 3.~'20. 2.	'20. 3.~'21. 2.	'21. 3.~'22. 2.	'22. 3.~'23. 2.
협약상태		- 다년도 협약 체결 - 연차 정산 완료	- 2차년도 연차 협약 체결 - 정산대상기간 : '20. 3.~'23. 2.		
수정 인건비금액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연구수당 계상액	최초	200만원	-	-	-
	수정	-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연구수당		○ 혁신법 시행(2021. 1. 1.)일 기준 계속과제로 정산대상 연구개발기간은 '20. 3.~'23. 2월임. ○ 협약 체결 당시에는 1차년도 연구수당만 계상하였으나, 연차협약 등을 진행하면서 2~4차년도 연구수당을 수정하여 계상함 ○ 혁신법 시행 이후에는 협약 체결 당시보다 연구수당 증액이 불가하지만, 연구자 이익 보호를 위하여 협약 변경 등을 통해 과제 관리 시스템에 연차별 연구수당을 새롭게 계상한 경우에는 위의 예시처럼 변경된 연구수당 계상액인 600만원(2차년도 200만원+3차년도200만원+4차년도200만원)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연구수당으로 간주함			

② 최초 협약 당시 기준 연구수당이 수정인건비의 20%가 초과된 계속과제

- 적용과제 : 2021.6.30.이전에 협약이 체결되어 2022. 3월 현재 진행 중인 계속과제 중 연차협약 등으로 연구수당 계상액이 수정되어 협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연구수당 계상액이 수정인건비의 20%가 초과된 과제
- 적용방법 : 2021.6.30. 이전의 연차협약 등으로 인해 증액된 연구수당 계상액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19. 3.~'20. 2.	'20. 3.~'21. 2.	'21. 3.~'22. 2.	'22. 3.~'23. 2.
협약상태		- 다년도 협약 체결 - 연차 정산 완료	- 2차년도 연차 협약 체결 - 정산대상기간 : '20. 3.~'23. 2.		
수정 인건비금액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연구수당 계상액	최초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수정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 (수정계상 불가)
연구수당		○ 혁신법 시행(2021. 1. 1.)일 기준 계속과제로 정산대상 연구개발기간은 '20. 3.~'23. 2월임. ○ 협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연구수당 계상액은 800만원이나, 2·3차년도 수정인건비가 증액되어 연차협약 등을 통해 연구수당 또한 각 400만원으로 증액되어 4차년도 현재 시점에서 사용한 연구수당이 200+400+400=1,000만원으로 최초 계상액인 800만원을 초과함. ○ 다만, 혁신법 시행 이전에 연차별 연구수당 증액이 가능하였으므로 이미 증액된 연구수당 계상액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연구수당으로 간주하여 정산 시점에서 수정인건비의 20%인 연구수당은 1,200만원(2차년도400만원+3차년도 400만원+4차년도200만원)으로 보아 2·3차년도에 증액된 연구수당을 인정			

③ 혁신법 시행 후 정산대상기간 내 참여연구자가 1명인 계속과제

- 적용과제 : 2021.1.1.이전에 협약이 체결되어 2022. 3월 현재 진행 중인 계속과제 중 정산대상기간 내 참여연구자는 2명 이상이나, 혁신법 시행 후 참여연구자 1명으로 수행된 과제
- 적용방법 : 정산대상기간 동안 과제를 계속 수행 중인 참여연구자 1명에게 지급된 연구수당이 계상액의 70%가 초과 지급되더라도 적합하게 사용한 것으로 인정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19. 3.~'20. 2.	'20. 3.~'21. 2.	'21. 3.~'22. 2.	'22. 3.~'23. 2.
협약상태	- 다년도 협약 체결 - 연차 정산 완료	- 2차년도 연차 협약 체결 - 정산대상기간 : '20. 3.~'23. 2.		
참여연구원		2명	혁신법('21. 1. 1.) 이후 1명	
연구수당 계상액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연구수당	○ 혁신법 시행(2021. 1. 1.)일 기준 계속과제로 정산대상 연구개발기간은 '20. 3.~'23. 2월임. ○ 정산대상기간에서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일 경우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 개발과제 연구수당 집행(계상)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다만, 혁신법 시행 전에 참여연구자가 2명이었고, 혁신법 시행 이후부터 참여연구자 1명으로 수행된 과제의 경우 정산대상기간 동안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연구수당 계상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해도 혁신법 시행 이후 참여연구원 1명인 연구개발과제인 점을 고려하여 인정함.			

3. 참고사항

- 동 경과조치는 계속과제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인 바, 안내하는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연구개발기관 추가 및 인건비 증액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연구수당 증액은 불가함
- 「혁신법」 시행 전에 연차 정산을 완료하고 연구수당을 다음 연차로 이월한 과제의 경우, 연구수당 증액 판단의 기간은 총 연구개발기간으로 하되 정산 대상 기간은 연차 정산 완료 이후 기간으로 함
 - 이는 「혁신법」 및 매뉴얼에 따라 기 안내된 원칙을 적용하는 것임
- 과제 관리 시스템 개선 미비로 협약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전문기관은 계속과제의 연구수당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바람

- 혁신법 시행 전 연차 정산을 완료한 후 연구수당을 이월한 과제에서 정산 대상 기간의 연구수당 총액이 수정인건비 총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초과된 연구수당은 반납하여야 함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19. 3.~'20. 2.	'20. 3.~'21. 2.	'21. 3.~'22. 2.	'22. 3.~'23. 2.
협약상태	- 다년도 협약 체결 - 연차 정산 완료 - 연구수당 차년도로 이월	- 2차년도 연차 협약 체결 - 정산대상기간 : '20. 3.~'23. 2.		
수정 인건비금액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연구수당 계상액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200만원(이월액)	-	-
연구수당	○ 혁신법 시행(2021. 1. 1.)일 기준 계속과제로 정산대상 연구개발기간은 '20. 3.~'23. 2월임. ○ 1차년도에서 이월된 연구수당을 포함한 연구수당 총액은 수정인건비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야 함. ○ 따라서 혁신법 시행 전에 이월된 연구수당을 포함한 연구수당 총액이 정산대상 연구 개발기간의 수정인건비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연구수당은 반납하여야 함.			

참고 1 관련 규정 및 매뉴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원래계획"이라 한다)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81

Q6. 협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협약 체결 당시의 연구수당보다 증액할 수 없는 것인지?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원래계획"이라 한다)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제2항 후단은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을 막기 위하여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협약 체결 당시”란 최초 협약이 체결된 시점을 의미함